

근로자이사후보 선거관리 운영내규

제정 2017.01.2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 본 지침은 정관에 의거 서울디자인재단의 근로자이사 후보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선거 관리 위원 회

제2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 사무를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울디자인재단 근로자이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① 선거관리위원 7인(위원장 1명, 노사 각 3명)

제3조(선거관리위원 위촉)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절차에 의거 선출한다.

-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은 노사대표 각 3명으로 구성하되 다양한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기능)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입후보자 등록, 자격심사, 사퇴수리 및 기호추첨
2. 선거인명부 작성
3. 투표 운영방법 또는 투·개표소 설치 및 관리
4. 선거운동 방법의 결정 및 승인
5. 선거에 관련된 모든 공고
6. 근로자이사후보 득표순위 확정 및 선거록 작성
7. 선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 실시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시달과 선거 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관리운영)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에 대한 협조 요구가 있을 때는 서울디자인 재단은 응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서울디자인재단에서 부담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소집 및 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의 등록 마감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하며, 등록 마감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선거하여야 한다.

제3장 입후보등록

제8조(입후보자의 등록 및 선거) ① 근로자이사에 입후보하려는 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별지서식1]를 작성하고, [별지서식2]에 선거 공고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원의 5%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이사에 입후보하려는 직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③ 등록이 무효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본인에게 통보하고 전체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선거의 시기) 근로자이사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실시한다.

제10조(입후보자의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등록신청서를 심사하여 등록을 확정한다. 단, 결격사유 또는 결함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본인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확정되면 모든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의 기호는 아라비아숫자로 하며, 접수 마감 후 추첨에 의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사퇴를 하였을 때 또는 무효가 발생한 경우 이를 모든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선거 운동

제11조(선거운동 및 선거유인물) ① 입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정견발표를 위해 내용 등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용 검토 후 모든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거운동은 및 정견발표는 자유서식으로 작성하며, 정견발표는 3회 이내로 한다.

③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허용하되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하고, 허위사실 유포 및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은 금지한다.

제12조(선거운동 기간) ①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투표 전일 24시까지로 한다. ②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후보 추천 서명 등 입후보를 위한 사전 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조(금지사항) ①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대표이사의 지원을 받거나 직원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4. 각종 선거 관련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5. 기타 규정 등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
6.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선거운동 유인물을 홈페이지 또는 내부그룹웨어에 게시 및 유포하는 행위
7. 기타 위배되는 유인물은 일체 불허한다.
8. 기타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 발생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14조(금지사항 위반자의 조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조의 위반 사실이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식사과명령, 입후보자 무효결의 및 당선 무효처분을 할 수 있고, 중대한 사항의 위반자는 규정에 따라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제5장 선거인 명부

제15조(선거권자) 서울디자인재단에 재직하는 상근임원 및 직원은 근로자이사후보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제16조(피선거권) ① 입후보자는 선거일 현재 서울디자인재단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근로자이사 임명 시 또는 임명 후에도 이에 해당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제1항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제17조(선거인 명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일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 명부에는 선거권자의 부서명, 성명, 임용일자 등을 기재하며, 기타 필요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열람) 선거인명부 열람은 투표 전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19조(명부 수정) 선거인명부 수정 중 착오 또는 누락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증빙에 의하여 수정, 추가하고 선거관리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6장 투표와 개표

제20조(근로자이사 후보의 선출) ① 근로자이사후보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이사후보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 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자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21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전자투표 또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직원 1인 1표로 한다.

제22조(투표장소, 시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장소 및 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투표용지 및 투표함) 투표용지 교부 시는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의거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 받을 수 있다.

제24조(부재자 투표) 부재자 투표일시,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고한다.

제25조(참관인) 참관인은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명한 1명에 한하여 투표 및 개표사항을 참관 할 수 있다.

제26조(투표 및 개표 사무) 투표 및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 사무에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권자 중에서 투표관리관을 지명하여 투표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개표) 투표가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 선언 후 즉시 개표하고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28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선거권자가 선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즉시 결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 종료 후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이의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부정선거 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제13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 선거의 근거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1. 선거 무효
2. 당선 무효
3. 경고 처분

제7장 재선거

제30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입후보자가 없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
3.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무효 또는 당선 무효를 결정한 때

4. 제20조(근로자이사 후보의 선출) 제2항에 의한 당선인이 없을 때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8장 보 칙

제31조(규정의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2조(정 계) 선거관리위원 및 기타 선거 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태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부 칙 (2017.01.2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재)서울디자인재단 근로자이사후보 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서 | | |
|--|--------------------------|-------------|
| 성명 | | |
| 생년월일 | | |
| 소속부서 및 직급 | 팀 | 급 |
| 근무이력 (서울디자인재단)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 | 2005. 2. 1 ~ 2008. 4. 30 | 000팀 책임 |
| | | |
| | | |
| 첨부서류 | 입후보추천서 1부. | |
| <p>상기 본인은 (재)서울디자인재단 근로자이사 후보로 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근로자이사 후보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재)서울디자인재단 근로자이사 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 | |

(재)서울디자인재단 근로자이사후보 선거

후 보 자 추 천 서

| 부서 | 직급 | 성명 | 근무기간 |
|----|----|----|------|
| | | | |

상기인을 (재)서울디자인재단 근로자이사 후보로 추천 합니다.

년 월 일

(재)서울디자인재단 근로자이사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연번 | 부서 | 직위 | 성명 | 서명 |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11 | | | | |
| 12 | | | | |
| 13 | | | | |
| 14 | | | | |
| 15 | | | | |

※ 추천인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가능

【별지서식3】

(재)서울디자인재단 근로자이사 당선인 공고

서울디자인재단 근로자이사 선거의 당선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년 월 일

(재)서울디자인재단 근로자이사 선거관리위원장

| 기호 | 부서 | 직위 | 성명 |
|----|----|----|----|
| | | | |
| | | | |

【별지서식4】

근로자이사 후보 자격심사표

| | | | |
|----------|--|----------------|--|
| 접수 번호 | | 성명 | |
| 소속 | | 주요 학력 경력 | |

| 자격 내용(임원추천위원회 임원후보자 자격기준 준용) | | 가 | 부 |
|------------------------------|------------------------------------|---|---|
| 포괄적 자격 요건 |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가? | | |
| | 비전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추었는가? | | |
| |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능력을 갖추었는가? | | |
| |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인가? | | |
| 필수 자격 요건 |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15조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한가? | | |
| 구체적 자격 요건 | 서울디자인재단 직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였는가? | | |

※ 자격 해당 가부 내용에 O, X로 표기

* 정관 제 15조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채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년 월 일

위원 : ○ ○ ○ (서명)